

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박상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6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0일

발 의 자 :박상구 의원(1명)

찬 성 자 :강대호, 권수정, 권영희,
김기대, 김기덕, 김상진,
김수규, 김재형, 김정태,
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
김혜련, 박기열, 박기재,
박순규, 송도호, 송아량,
양민규, 유 용, 이광성,
이광호, 이성배, 이정인,
이태성, 임종국, 전석기,
최 선, 최웅식, 홍성룡,
황규복, 황인구 의원(32
명)

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예규인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개정으로 ‘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기준’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립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함. (안 제4조, 제5조제2항제2호나목)
- 나.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을 삭제함. (안 제5조제1항제3호, 제6조제2항)
- 다.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·자문 요청 대상을 확대함. (안 제5조제3항)

라. 신기술 미반영 시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필수 의결조항을 삭제함. 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신기술 현장적용기준」”을 “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심의·자문 요청)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설계반영의무)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“신기술개발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호 중 “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·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「<u>신기술 현장 적용기준</u>」에 따른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(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)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「<u>건설산업기본법</u>」 제2조제4</p>	<p>제4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기능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4. ~ 6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

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
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
가. (생략)

나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6조
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

다. ~ 라. (생략)

3. (생략)

③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
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
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
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
에서 제외한다.

제6조(심의·자문 요청) ① 제5조
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
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
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
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
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
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
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
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
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
군(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)

가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나. ~ 다. (현행 다목 및 라목
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6조(심의·자문 요청) 제5조의
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
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
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
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
하여야 한다.

<삭제>

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.

제10조(설계반영의무)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“신기술개발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,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자료축적 및 활용) 시장은

제10조(설계반영의무)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“신기술개발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14조(자료축적 및 활용) -----

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
3. (생략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제2호-----

3. (현행과 같음)